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864호 2024. 9. 5.(목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9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
공고 _____ 1

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-1790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09. 0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- 1. 공 고 기 간 : 2024. 09. 05. ~ 2024. 09. 20.(16일간)
- 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70노2404 등 16건(붙임 참조)		
	차 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1, FAX 032-560-2793)		

3. 유 의 사 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

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4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1)

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70노2404	카렌스LPG	안**	2024.08.01
2	55조7675	K7	이**	2024.08.02
3	69어7375	GLC350 e 4Matic	하**	2024.08.05
4	55수6449	그랜저(GRANDEUR) 하이브리드	서**	2024.08.06
5	18노6222	카라반SWB	문**	2024.08.12
6	259가8978	A7 55 TFSI quattro	기**	2024.08.14
7	61우4360	K9	송**	2024.08.19
8	40조7303	에쿠스 (EQUUS)	전**	2024.08.20
9	60주8483	원스톱2.0SD디젤	윤**	2024.08.22
10	13모9519	그랜저(GRANDEUR)	윤**	2024.08.22
11	22서1822	제네시스(GENESIS)	윤**	2024.08.22
12	45오5496	SM5	윤**	2024.08.22
13	13가8827	SM5	윤**	2024.08.22
14	18라0179	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	손**	2024.08.23
15	인천83바9942	한특40피트컨테이너샤시	(**	2024.08.29
16	128호1412	K3	(**	2024.08.30